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육위원회

#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검 토 보 고

<국립전라남도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등>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62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4

1. 총괄적검토 ····· 4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 4

2) 제정안의 구성 ····· 5

3) 지역 의과대학 설치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5

4) 고려사항 요약 ····· 7

2. 의과대학 설치·타법 우선 적용 ····· 8

3. 입학정원 범위 설정 ····· 11

4.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13

1) 예산지원 ····· 13

2) 기금의 조성 ····· 16

3)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17

4)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19

5. 지역공공의료과정 ····· 21

6.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 학생에 대한 지원 등 ····· 23

7. 의무복무・의사 면허의 취소 등 ····· 26

8.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 29

9. 제정안 부칙에 대한 검토 ····· 30

[참고자료] ····· 34

##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02.
3. 회부연월일 : 2025. 10. 10.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특히, 전라남도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서 인구 대비 넓은 면적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전라남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이에 전라남도에 있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2026년 3월에 통합하여 출범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며,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라. 국가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13조).

## Ⅲ. 검토의견

### 1. 총괄적 검토

####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 **제정안**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을 100명 내외로 하며,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예산지원의 특례, 기금의 조성,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지역 공공의료과정 및 의무복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 전라남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라남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전라남도는 도서 및 벽지 지역이 많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의료수요가 큼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의료 인력 공급, 특히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측면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낳고 있음. 최근에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급감('10년 : 474명 → '25년 : 179명)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정안은 지역 내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 제정안의 구성

□ **제정안**은 본칙 16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
|---|---|
| □ 본칙(16개 조문) | |
| 제1조(목적) | 제9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 제2조(설치) | 제10조(지역공공의료과정) |
| 제3조(입학정원) | 제11조(학비등의 지원)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
| 제5조(예산지원의 특례 등) | 제13조(의무복무) |
| 제6조(기금의 조성 등) | 제14조(의사 면허의 취소 요청 등) |
| 제7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 제15조(의무복무의 지도·감독) |
| 제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제16조(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
| □ 부칙(2개 조문) | |
| 제1조(시행일)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 3) 지역 의과대학 설치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지역 의과대학 설치 관련 특별법안은 제정안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제22대국회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 ]

| 의안번호 | 법안명 | 대표발의의원 |
|---|---|---|
| 2200279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김원이의원 |
| 2200474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김문수의원 |

| | | |
|---|---|---|
| 2202120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강승규의원 |
| 2202379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김형동의원 |
| 2202915 |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윤종군의원 |
| 2213317 |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 김문수의원 |
| 2213462 |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서미화의원 |

□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8건의 지역 의과대학 설치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해당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제21대국회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 ]

| 의안번호 | 법안명 | 대표발의의원 |
|---|---|---|
| 2102624 |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강기윤 의원 |
| 2115571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김원이 의원 |
| 2116729 |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 소병철 의원 |
| 2117015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성일종 의원 |
| 2118300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김회재 의원 |
| 2123732 |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 최형두 의원 |
| 2124533 |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최영희 의원 |
| 2125447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최혜영 의원 |

### (4) 고려사항 요약

□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우선 법체계적 측면에서 현재 「보건의료기본법」[1]에 따라 중장기적 수급추계를 거쳐 의사의 양성 규모가 정해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의 의대증원 조치로 인한 갈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접 의대 입학정원을 규정하는 것이 또다른 의정갈등의 소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음.

□ 아울러, 지역공공의료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은 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2] 설립비용 외에도 운영비·연구비 등 관련 비용이 수반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 2. 의과대학 설치·타법 우선 적용(안 제2조 및 제4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를 특정하여 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 제 정 안 |
|---|
| 제2조(설치) 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이하 "국립전남통합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하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br>②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은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br>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학자격·수업연한·교육과정·학위의 수여와 그 밖에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검토의견

□ 현행법령에 따를 때,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3],

3)「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의과대학의 경우 「의료법」[4]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수준으로 정원제한을 받는데, 2025학년도 기준 의과대학의 정원은 5,058명이고, 정원내 모집인원은 4,565명임.

□ 법이 제정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과대학을 설립한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의과대학과는 달리 특별법으로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게 되고, 동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특별히 적용되는 정원과 의무복무 등의 규정을 두게 됨.

□ 다만, 현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기존 법률 및 규정에서 의대 설립 요건·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의대 설립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학과의 설치 등은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4) 「의료법」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025.4.17)[5]에 따라 중장기적 수급추계를 거쳐 양성 규모가 정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대학의 의과대학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경상국립대학교는 기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논의·합의 등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5)「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입학정원 범위 설정(안 제5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로 하여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 제 정 안 |
| --- |
| 제3조(입학정원) 교육부장관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2) 검토의견

□ 제정안에 따를 때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법으로 확보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2024년 3월 20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각 의과대학의 정원이 배정되었음.[6] 이러한 의대 정원 증원 조치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의정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의료공백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6) 참고자료 4.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의과대학의 정원을 더 많이 증가시켜 또다른 의정갈등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의사의 정원은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특정 지역·대학의 의과대학 정원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4.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1) 예산지원(안 제8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가가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의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

| 제 정 안 |
| --- |
| 제5조(예산지원의 특례) ① 국가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 지원 및 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7], 제정안은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음.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동, 부속병원 등 건물이 필요하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

7)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대학은 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8], 설립비용 외에도 운영비·연구비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실제 의과대학의 운영을 위해서는 부속병원이 필요한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속병원은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 퇴원환자 2,000명 이상, 내과, 외과 등 8개과의 진료과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 대학병원의 요건 관련 법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 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가. **병상 규모** :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

나. **연간 진료실적** : **퇴원환자 2,000명 이상**

다. **병상 이용률** : 실제 운영 병상 수를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 이용**

라. **시설 및 기구** :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인턴당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을 갖출 것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 |
|---|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 실적이 있어야 한다. |
|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br>⇒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이상 8개과) |
|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 이러한 지원규정은 재정 소요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의과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025.4.17)[9]에 따라 의사인력은 별도 수급추계기구에서 중장기 수급 추계를 거쳐 양성 규모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의대 신설이 결정되면, 정부는 필요한 예산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별도 법령을 통해 예산지원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9)「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조성(안 제9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전라남도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 제 정 안 |
| --- |
| 제6조(기금의 조성 등) ① 전라남도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br>② 기금은 전라남도가 관리·운용한다.<br>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br>1. 보조금 및 기부금<br>2. 제9조의 차입금<br>3. 기금운용수익금<br>4. 그 밖의 수익금<br>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br>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검토의견

□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라남도가 기금을 조성하여 의과대학의 설치 및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3)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안 제7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함.

[제정안 조문]

| 제 정 안 |
| --- |
| 제7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br>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br>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을 규정함으로

써 해당 의과대학이 원활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다만,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10] 국·공유재산의 양여는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양여는 소유권을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예외적인 경우[11]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공유재산은 유상매각이 원칙인 점,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12]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양여 특례를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13]에 따라 국가에게

---

10)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가 가능하므로, 본 제정안에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 4)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안 제11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의 장이 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 제 정 안 |
|---|
| 제9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의 장은 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br>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2) 검토의견

□ 이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14]와 인천대학교[15]에서도 장기차입 및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학교채 발행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의 장이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5)「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5. 지역공공의료과정(안 제10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의 장이 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할 때 일정한 비율을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입학시키도록 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의 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 제 정 안 |
| --- |
| 제10조(지역공공의료과정) 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의 장은 의과대학의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공공의료 관련 과목,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지역공공의료과정(이하 "지역공공의료과정"이라 한다)의 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br>② 지역공공의료과정의 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전라남도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인력 육성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의료 관련 과목과정과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들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임.

□ 다만,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별도 법률 신설을 검토하였으며,[16]

관련 법률안이 발의[17]되어 최근(2025. 11. 18)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도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로서, 전국에 걸쳐 지역의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유사 과정을 별도의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 "지역의사제 법안 정기국회 통과 최대한 지원"」, 2025.10.10.
17)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하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 2200772,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 2208008,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213582,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등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6.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입학금 등 학비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재학 중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사람 등에 대하여 지원 중단과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 제 정 안 |
| --- |
| 제11조(학비등의 지원) 국가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br>제12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1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 성적기준의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br>② 제1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br>1. 재학 중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사람<br>2.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br>3.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br>④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br>⑤ 반환금의 산정방법·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검토의견

□ 제정안에 따를 때,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의 지역의사 선발전형 입학생은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의무복무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의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보건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업이 정지된 경우 학비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무복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확보하는 차원임.

□ 한편, 학비반납과 관련하여 경찰대학이나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에도 제정안과 그 요건이나 범위에는 일부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학비 반환 규정을 두고 있음.

[ 학비 반납 관련 규정 현황 ]

| 구 분 | 학비 반납 사유 |
|---|---|
| 사관학교 | · 별도 규정 없음.<br>- 다만, 입학과 동시 군적에 편입, 대부분 의무복무 이행<br>-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이나 전학 금지 |
| 경찰대학 | · 의무복무를 불이행하는 경우<br>-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2항<br>제10조(의무복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br>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br>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br>- 학업 중단 시 반납 의무는 없음(단,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금지) |
| 한국<br>농수산대학 | · 의무복무 불이행 및 중도 퇴학, 제적처분 받은 경우<br>-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br>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 이행) ③ 법 제9조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망·신체장애·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교육부는 학생이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퇴학 외에 자퇴하거나 대학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되는 경우가 있어, “자퇴하거나 퇴학 등 제적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중도탈락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7. 의무복무·의사 면허의 취소 등(안 제13조, 제14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10년의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의무복무 대상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 제 정 안 |
|---|
| 제13조(의무복무) ① 제1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라남도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보건업무에 10년 동안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br>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br>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br>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br>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이하 이 조에서 "전문의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br>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br>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수련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전문의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수련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br>제14조(의사 면허의 취소 요청 등) 교육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 검토의견

□ 제정안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의 수업연수를 일반적인 의과대학과 같이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총 6년[18]으로 보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학비지원기간의 약 1.7배 수준임. 이는 학비지원기간 대비 의무복무기간을 1.5배~2.5배 사이로 규정한 사관학교(2.5배), 경찰대학(1.5배), 한국농수산대학(2배) 등과 유사한 수준임.

[ 의무복무기간 현황 ]

| | 사관학교 | | | 경찰대학 | 한국 농수산대학 |
|---|---|---|---|---|---|
| | 육/해/공군 | 육군3 | 국군간호 | | |
| 근거법률 | 사관학교 설치법 | 육군3 사관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 사관학교 설치법 | 경찰대학 설치법 | 한국 농수산대학 설치법 |
| 설치목적 | 군 장교 양성 | 육군 장교 양성 | 군 간호장교 양성 | 경찰간부 양성 | 농어업인력 양성 |
| 소관부처 | 국방부 | 국방부 | 국방부 | 경찰청 | 농림축산 식품부 |
| 대학 유형 | 대학 | 대학 | 대학 | 대학 | 전문대학 |
| 수업연한 | 4년 | 2년 | 4년 | 4년 | 3년 |
| 학위 | 학사학위 | 학사학위 | 간호 학사학위 | 학사학위 (법학/행정학) | 전문 학사학위 |
| 졸업자 임용 | 졸업자 소위 임용 | 졸업자 소위 임용 | 간호사시험 합격자 소위 임용 | 졸업자 경위 임용 | 임용 × (의무복무) |

18)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

| 의무복무분야 | 각군 장교 | 육군 장교 | 국군 간호장교 | 경찰 간부 | 농어업분야 |
|---|---|---|---|---|---|
| 의무복무기간 | 10년 (5년차 전역기회) | 6년 | 6년 | 6년 | 지원기간의 2배 (최대 6년) |
| | 군인사법 §6②③ 및 §7① | | | 법 §10① | 법 §9① |
| 병역기간 산입 | ○ (현역장교 복무) | ○ (현역장교 복무) | ○ (현역장교 복무) | ○ (의무경찰대 대원) |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산입×) |
| | 병역법 §5① | | | 령 §23등[19] | 령 §12②[20] |

19)「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20)「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과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안 제16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주거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과 의무 복무 종료 후 우선 채용 등 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 제 정 안 |
| --- |
| 제16조(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주거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2) 검토의견

□ 제정안에 따를 때,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의사는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의무복무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무에 대응하여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안은 해당 의사에 대한 주거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역공공의료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의무복무 의사가 의무복무가 종료된 후 채용을 지원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의무복무 의사에게 의무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동기부여와 동시에 해당 의사 직에 대한 유인기제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위해 국가가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채용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부담주체(전라남도 외 지역을 포함한 국가)와 수익자(전라남도 지역)가 달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9. 제정안 부칙에 대한 검토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의 부칙은 제1조의 시행일과 제2조의 평가·인증 절차의 특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규정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및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신청 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평가·인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부칙 조문]

| 부 칙 |
|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평가·인증 절차의 특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및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신청 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이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평가·인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2) 검토의견

□ 제정안 부칙은 제2조에서 평가·인증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의2[21]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22]은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2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학교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인증 시에는 일정한 시기와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교육부는 제정안 부칙 제2조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및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 등’, ‘평가·인증 신청 기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례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 의과대학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해야 하며, 대학이 인증을 받지 못

---

③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할 경우 그 피해는 입학생에게 돌아가므로, 의학교육의 질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 평가·인증에 대하여 예외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 문 의 처 |
| --- |
| 02)6788-5188 |

## 참고 1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 진행 상황

□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 신청 개요

○ (목적) 의과대학 정원 확보를 통해 **통합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초일류·초글로컬 **지역 거점 대학으로의 발전** 등

○ (통합대학명/출범시기) 가칭국립한국제일대학교 / 2027. 3. 1.

**< 통합 추진 절차 >**

| 1 통폐합 사전분석 및 추진방향 수립 | ⇒ | 2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대학 간 합의 | ⇒ | 3 통폐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4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심의 및 승인 | ⇒ | 5 통폐합 승인 후 절차 |
|---|---|---|---|---|---|---|---|---|
| 대학 | | 대학 | | 대학 | | 교육부 | | 대학/교육부 |

□ 통합 관련 주요 진행 경과

○ ('24.12.31.)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대학 통합 신청서 제출**

※ 통합대학 교명 등 의견수렴 미비, 대학 통합 거버넌스 및 학사구조 개편 미비 등

○ ('25.1.~9.) 교육부, **보완 필요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 ('25.9.19.)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대학 통합 신청서 보완 제출**

○ ('25.10.~11.)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제1~4차 회의

□ 통합 추진 현황 : 통폐합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까지 진행

○ 강원대-강릉원주대의 **'1도 1국립대' 모델**을 참고하여 **현행 법령 내에서 '느슨한 통합'**을 위한 **계획 마련 중**

○ **거버넌스 개편, 캠퍼스 특성화** 및 **학사구조 개편 계획** 등에서 **구체적인 안* 마련** 및 **대학 간 이견 조정 필요**

* (예시) 교명, 통합대학 본부 위치, 학과·교육과정 변경, 통합대학 규정 제·개정 등

## 참고 2 의과대학 설립 관련 규정

###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함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 |
|---|
|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br>가. **병상 규모** :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br>나. **연간 진료실적** : **퇴원환자 2,000명 이상**<br>다. **병상 이용률** : 실제 운영 병상 수를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 이용**<br>라. **시설 및 기구** :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인턴당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을 갖출 것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 |
|---|
|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br>⇒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이상 8개과) |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설립**한다.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 참고 3 4대 교육 여건 산정 기준(대학설립 · 운영규정)

□ 교사(교사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

| 계 열 별 |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 · 체능 | 의학 |
|---|---|---|---|---|---|
| 학생 1인당 기준면적(㎡) | 12 | 17 | 20 | 19 | 20 |

※ 전문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교지 기준면적(제5조제1항 관련)

| 학생 정원 (편제정원) | 400명 이하 | 400명 초과~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 |
|---|---|---|---|
| 면적(㎡) | 교사건축면적 이상 | 교사기준면적 이상 |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 교원 산출기준(제6조제1항 관련)

| 계열별 |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 · 체능 | 의학 |
|---|---|---|---|---|---|
| 교원1인당 학생수(명) | 25 | 20 | 20 | 20 | 8 |

□ 수익용 기본재산(제7조제1항 관련)

- 대학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 제외)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 100억원

## 참고 4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 시도명 | 인구 천명당 의사수(2021) | 학교수 | 정원 | 학교명(의예과 기준) |
|---|---|---|---|---|
| 계 | 2.13(평균)<br>(OECD 평균 3.6명) | 40 | 3,058 | |
| 서울 | 3.37 | 8 | 826 |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
| 부산 | 2.45 | 4 | 343 | 부산대(125), 고신대(76), 인제대(93), 동아대(49) |
| 대구 | 2.55 | 4 | 302 | 경북대(110), 계명대(76), 영남대(76), 대구가톨릭대(40) |
| 인천 | 1.77 | 2 | 89 | 인하대(49), 가천대(40) |
| 광주 | 2.54 | 2 | 250 | 전남대(125), 조선대(125) |
| 대전 | 2.56 | 2 | 150 | 충남대(110), 을지의대(40) |
| 울산 | 1.60 | 1 | 40 | 울산대(40) |
| 경기 | 1.68 | 3 | 120 | 아주대(40), CHA의과대*(40), 성균관대(40) |
| 강원 | 1.81 | 4 | 267 | 강원대(49), 한림대(76), 가톨릭관동대(49), 연세대원주(93) |
| 충북 | 1.57 | 2 | 89 | 충북대(49), 건국대충주*(40) |
| 충남 | 1.54 | 3 | 182 | 단국대천안(40), 순천향대(93), 건양대(49) |
| 전북 | 2.06 | 2 | 235 | 전북대(142), 원광대(93) |
| 전남 | 1.75 | - | - | - |
| 경북 | 1.38 | 1 | 49 | 동국대경주(49) |
| 경남 | 1.71 | 1 | 76 | 경상대(76) |
| 제주 | 1.77 | 1 | 40 | 제주대(40) |
| 세종 | 1.23 | - | - | - |

## 참고 5 지역별 의대 설치 현황(2025년 기준)

| 연번 | 권역 | 지역 | 설립 | 학교명 | 정원 | 비고 |
|---|---|---|---|---|---|---|
| 1 | 수도권 | 서울 | 국립대법인 | 서울대학교 | 135 | |
| 2 | 수도권 | 서울 | 사립 | 가톨릭대학교 | 93 | |
| 3 | 수도권 | 서울 | 사립 | 경희대학교 | 110 | |
| 4 | 수도권 | 서울 | 사립 | 고려대학교 | 106 | |
| 5 | 수도권 | 서울 | 사립 | 연세대학교 | 110 | |
| 6 | 수도권 | 서울 | 사립 | 이화여자대학교 | 76 | |
| 7 | 수도권 | 서울 | 사립 | 중앙대학교 | 86 | |
| 8 | 수도권 | 서울 | 사립 | 한양대학교 | 110 | |
| 9 | 수도권 | 경기 | 사립 | 성균관대학교 | 120 | |
| 10 | 수도권 | 경기 | 사립 | 아주대학교 | 120 | |
| 11 | 수도권 | 경기 | 사립 | 차의과대 | 80 | 의전원 |
| 12 | 수도권 | 인천 | 사립 | 가천대학교 | 130 | |
| 13 | 수도권 | 인천 | 사립 | 인하대학교 | 120 | |
| 14 | 비수도권 | 강원 | 국립 | 강원대학교 | 132 | |
| 15 | 비수도권 | 경남 | 국립 | 경상국립대학교 | 200 | |
| 16 | 비수도권 | 광주 | 국립 | 전남대학교 | 200 | |
| 17 | 비수도권 | 대구 | 국립 | 경북대학교 | 200 | |
| 18 | 비수도권 | 대전 | 국립 | 충남대학교 | 200 | |
| 19 | 비수도권 | 부산 | 국립 | 부산대학교 | 200 | |
| 20 | 비수도권 | 전북 | 국립 | 전북대학교 | 200 | |
| 21 | 비수도권 | 제주 | 국립 | 제주대학교 | 100 | |

| 연번 | 권역 | 지역 | 설립 | 학교명 | 정원 | 비고 |
|---|---|---|---|---|---|---|
| 22 | 비수도권 | 충북 | 국립 | 충북대학교 | 200 | |
| 23 | 비수도권 | 충북 | 사립 | 건국대(충주) | 100 | |
| 24 | 비수도권 | 강원 | 사립 | 가톨릭관동대학교 | 100 | |
| 25 | 비수도권 | 강원 | 사립 | 연세대학교 분교 | 100 | |
| 26 | 비수도권 | 강원 | 사립 | 한림대학교 | 100 | |
| 27 | 비수도권 | 부산 | 사립 | 인제대학교 | 100 | |
| 28 | 비수도권 | 대구 | 사립 | 대구가톨릭대학교 | 80 | |
| 29 | 비수도권 | 경북 | 사립 | 동국대학교 분교 | 120 | |
| 30 | 비수도권 | 대구 | 사립 | 영남대학교 | 120 | |
| 31 | 비수도권 | 광주 | 사립 | 조선대학교 | 150 | |
| 32 | 비수도권 | 대구 | 사립 | 계명대학교 | 120 | |
| 33 | 비수도권 | 대전 | 사립 | 건양대학교 | 100 | |
| 34 | 비수도권 | 대전 | 사립 | 을지대학교 | 100 | |
| 35 | 비수도권 | 부산 | 사립 | 고신대학교 | 100 | |
| 36 | 비수도권 | 부산 | 사립 | 동아대학교 | 100 | |
| 37 | 비수도권 | 울산 | 사립 | 울산대학교 | 120 | |
| 38 | 비수도권 | 전북 | 사립 | 원광대학교 | 150 | |
| 39 | 비수도권 | 충남 | 사립 | 단국대학교 | 120 | |
| 40 | 비수도권 | 충남 | 사립 | 순천향대학교 | 150 | |
| 소계(40교) | | | | | 5,058 | |